

서울특별시 2030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안) 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) 의견청취안

의안 번호	20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8월 29 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산업 및 상권 활성화, 도시환경 정비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,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2030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」을 수립하고,
- 나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심지 기능 고도화 유도
- 정비 활성화를 위해 서울도심 정비예정구역 확대, 그 외 지역 정비가능구역 신규 지정
 - 중심지별 전략육성 기능 유도를 위한 주용도 지정, 유도용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도입

- 나. 풍부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구현
 - 공원·녹지 등 개방형 녹지공간 확보와 연계한 밀도 체계 마련 및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도입
 - 블록별 최소 1개 이상 공원·녹지공간 조성, 오픈스페이스 집적화, 연결녹지 등을 통한 순환형 녹지네트워크 구축
- 다. 공동화 및 직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도심 주거공급 확대
 - 도심 거주인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 공급
 - 한시 운영중인 서울도심 주거비율 완화(50% → 90%) 지속 유지
 - 서울도심 주거 도입 및 생활SOC 공급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
 - 대중교통 접근성 등 고려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
- 라. 구역별 특성에 맞게 기반시설계획 및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정비
 - 구역별 기반시설 확보현황 고려 기반시설 부담률 재정비
 - 공원·녹지 우선부담 등 기반시설 확보 우선순위 원칙 정립
 -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 계수 합리화

3. 추진경위

- '19.05.10. : 203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) 수립 방침
- '19.08.01. : 용역 착수
- '19.12.~22.07. : 기본계획(안) 수립 및 전문가 자문(6회)
- '22.08.30.~09.13 : 주민공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및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의견청취사항

※ 작성자 : 도심재창조과 도심재창조정책팀 조기석 (☎ 02-2133-4633)